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938,966,243	328,168,987
일반회계		9,927,581,962	297,827,459
특별회계		1,011,384,281	30,341,528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011,384,281	30,341,528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942,916	118,287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36,543,082	1,096,292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276,237	218,28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9,336,455	16,180,09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496,790	44,90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753,378	382,601
	소방특별회계	409,914,423	12,297,433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121,000	3,63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확정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8,958,29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2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